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499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 7.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293,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293,01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4648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5. ‘C은 원고에게 1,595,037원 및 그 중 1,082,248원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23. 12. 31. 기준 원리금의 합계액은 5,293,013원이다.

나. 상속분할 협의 및 부동산의 매각

1) 피고의 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2. 10. 26.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와 C, E, F가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23. 7. 14.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마치고 등기신청시에는 분할협의일자를 2022. 10. 26.으로 하여 2023. 7.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3. 6. 26.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라 2023.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인식은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형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500만 원은 C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C은 음약을 한다는 핑계로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들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방법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관계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범위

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인 2023. 12. 31.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5,293,013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는 8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21,250,000원(= 85,000,000원 × C의 지분 1/4)이 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5,293,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293,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희

별지